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4
----------	-----

2019. 6. 24.(월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김기창 의원 등 7인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  -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- 마. 주요내용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기창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어 명칭 변경  
(안 제8조, 제10조, 제19조)
-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 등  
(안 별표 2,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'18. 4. 6. 충청북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, 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실무반 편성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8조, 제10조, 제19조는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안의 문구를 간결하게 규정함.
- 안 별표 2,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함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 예고('19. 5. 24.~'19. 5. 2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, 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실무반 편성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##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”을 “위기관리 매뉴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후단 중 “재난분야 위기관리”를 “위기관리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도지사는 재난분야”를 “도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난분야 위기관리”를 “위기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”을 “위기관리매뉴얼”로 한다.

별표 2의 제1호 충청북도 주관부서란 “청년정책담당관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1호의 충청북도 주관부서란 중 “환경정책과”를 “기후대기과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4호의 충청북도 주관부서란 중 “환경정책과”를 “수질관리과”로 한다.

별표 4의 기호(□) 제2호 실무반의 2)차) 도지사란, 같은 호 기호(·) 2) 기호(□) 제2호 실무반의 2)차)의 도지사란, 같은 호 기호(·) 4) 기호(□) 제2호 실무반의 2)차)의 도지사란 및 같은 호 기호(·) 4)제2호 실무반의 2)차)의 도지사란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각각 “민간협력공동체과”로 한다.

별표 5의 제2호 실무반의 2)차) 도지사란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민간협력공동체과”로 한다.

별표 6의 협업기능반 ⑪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 
“민간협력공동체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대책본부 편성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(이하 “<u>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</u>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10조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)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</u>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 ① <u>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</u>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</p>	<p>제8조(대책본부 편성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“<u>위기관리 매뉴얼</u>”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위 <u>기관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 ① <u>도지사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/p>

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-----  
-- 위기관리 -----  
-----  
-----  
---

③ ----- 위기관리매뉴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

## 관계 법령

### 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(이하“대규모재난”이라 한다)의 대응·복구(이하“수습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도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·구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]

제3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중앙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안전처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